미국형법에 규제된 집행유예제도의 반동성

김 철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에 이르는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국가적지배를 유지하여왔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폐지)

자본주의법이 다 그러하듯이 미국의 집행유예제도 역시 반동적지배계급을 위하여 복 무하는 통치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부르죠아형법에 규제되여있는 집행유예제도는 범죄의 위험성정도나 범죄자의 《개준성》정도를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사회에 내보내여 형을 집행한것으로 인정하는 형법상제도를 말한다.

오늘 미국의 형사법실천에서 적용되고있는 집행유예에는 순수한 집행유예와 판결보 류의 집행유예, 분리판결집행유예, 충격집행유예, 거주집행유예 5가지의 형태가 있다.

미국의 집행유예제도는 력대 미국통치배들의 반동적인 형사정책에 의하여 그것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온갖 범죄들을 무마시켜주고 형사적책임을 회피할수 있게 해주는 합법 적공간으로, 범죄로 얼룩진 미국사회를 미화분식하는 법률적도구로 더욱 반동화되였다.

오늘 반동적인 미국의 어용형법학자들은 집행유예가 범죄자를 사회에 빨리 적응시킬 뿐아니라 육체적고통이나 자유제한에서 감금에 비교할수 없기때문에 《인권》이 잘 보장된 형벌이라고 후안무치한 소리를 마구 줴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동적인 지배계급과 그의 어용나팔수들이 온갖 감언리설로 저들의 집행유예제도를 미화분식하려고 책동하여도 형벌아닌 《형벌》로서의 집행유예를 통하여 추구하는 저들이 반동적목적을 결코 숨길수 없다.

미국형법에 규제된 집행유예제도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파쑈적이며 반동 적인 미국의 사회제도를 비호두둔하는데 적극 리용되고있는데 있다.

미국은 《범죄의 효과적통제》를 위해 집행유예제도를 비롯한 형사법적제도들의 규제내용을 통치실현에 유리하게 부단히 개조하였으며 그 무슨 《통치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심》이라는 미명아래 집행유예에 대한 심리와 적용절차에서 여러개의 단계들도 규제하여놓았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미국의 형사관계에서 마치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보장되고있는듯이 크게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치배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이 온갖 궤변으로 미국집행유예제도의 계급 적성격을 부인하려고 하여도 철저히 그것이 미국사회를 움직이고 좌우지하는 통치계급에게 복무하는 지배계급의 집행유예제도이며 그들의 온갖 범죄적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것을 결코 가리울수 없다.

그것은 우선 미국형법에서 집행유예를 형벌의 종류로 규제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국형법이 규제한 집행유예제도의 반동적특징의 하나는 집행유예를 형벌의 하나로 규제하고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범죄의 경중과 범죄자의 범죄적의식상태, 개준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범죄자로 판결된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일정한 조건밑에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개조기간을 주는 재판소의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법이 정한 기간안에 범죄자가 집행유예의 요구조건들을 지키지 않거나 새로운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재판소는 새 범죄 에 대한 형벌은 물론 유예받았던 형벌도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집행유예는 판결된 형벌의 집행에 대한 재판소의 태도와 관련한 문제이며 재판소가 결정한다고 하여 형벌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형벌은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에 대한 국 가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강제적인 징벌적성격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형벌이라고 하는것이다.

미국은 바로 집행유예를 형벌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국의 형벌을 《인권이 보장된 형벌》로, 이것을 적용하는 사법기관이나 정부를 《민주주의적인 기관》으로 둔갑시키며 나아가서 미국의 반동적인 사회제도가 안고있는 파쑈적성격을 가리우려고 교 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집행유예의 종류와 적용대상에 대한 규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집행유예를 형벌로 규제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해놓고 마치도 미국사회의 수많은 범죄들에 구체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 도》로 된다고 적극 주장하고있다.

일반적으로 형벌의 종류를 다시 세분화하는것은 전체적으로 형벌의 종류를 그만큼 늘이는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형벌에 대한 재판소의 선고는 그것이 부가형이 아닌이상 구 체적인 어느 하나의 형벌로서 선고되기때문이다.

미국형법에서 형벌의 종류를 형식상 5가지로 규제하고있다고 하지만 집행유예나 중 간처벌과 같은 형벌들이 여러가지로 세분화되여있는 조건에서 형벌종류는 사실상 형법에 서 규제하고있는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할수 있다.

미국이 형벌로서의 집행유예를 세분화하고있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의 구체적적용을 통하여 저들의 통치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데 있다.

미국형법에서는 집행유예의 고유한 목적에 맞지 않게 그 적용범위의 폭을 넓혀놓고 있다. 집행유예제도를 설정하는 목적은 중요하게 죄를 범한자들에게 비록 그들의 죄행으로 보아서는 응당 자유형을 집행하여야 마땅하지만 범죄자자신이 스스로 뉘우치고 개조 될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경범죄들에 적용하는것이 일반원칙이고 추세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미국형법에서는 집행유예의 적용대상에서 제한이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적용대상의 범위를 중죄를 범한자에게도 역시 집행유예를 줄수 있다고 넓게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집행유예제도가 미국의 형사재판실천에서 저들의 반동적인 형사정책실현의 적극적인 법률적수단으로 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형법에 규제된 집행유예제도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반동적지배층의 온갖 범죄적행위를 무마시키는 합법적공간으로 되고있다는데 있다.

오늘 미국사회가 《범죄의 왕국》으로, 《범죄의 서식지》로 사람들속에 인정되고있는것은 중요하게 력대 미국지배층의 범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반동화되여있는데로부터 형사법적 제도들이 범죄자들에게 형사적책임을 회피할수 있는 여러가지의 법률적인 공간들을 적지 않게 제공해주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미국의 형법에 규제된 집행유예제도 역시 범죄자들에게 형사적책임을 회피할수 있는 법률적공간을 제공해주는 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것은 우선 《판결전조사》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중범죄를 범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국의 형사실천에서 볼 때 《판결전조사》라는것은 판사의 요구에 따라 집행유예기관이 유죄로 확증된 범죄자에 대하여 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 집행유예를 줄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은 범죄자의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범죄자와 련관있는 관계자들을 통하여 진행된다. 여기서 집행유예기관이 《판결전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제기하는 《충고》나 《권고》는 범죄자에 대하여 재판소가 내리는 형벌의 결정과 선고에 강한 영향을 준다.

오늘 미국의 형사실천에서 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하게 집행유예기관의 《판결전조사》에 의거하고있다는것은 미국의 대다수 사건들의 《판결전조사》보고에서 제기된 《충고》와 《권고》들이 재판소의 실제적판결과 매우 일치되고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으며 미국자체도 이것을 인정하고있다.

미국에서 범죄에 대한 형벌의 선정이 중요하게 《판결전조사》에 전적으로 달려있기때문에 범죄자들은 자연히 형사적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결전조사》보고서를 저들에게유리하게 조작하는데로 나가게 된다. 특히 《판결전조사》활동을 재판소가 직접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뢰받은 집행유예기관이 진행하기때문에 범죄자들은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더우기 미국에서는 《판결전조사》를 개인이나 대리인들을 통하여 진행하는것도 허용하고있기때문에 이것은 범죄자들의 《형벌조작》을 위한 합법적공간으로 리용되고있다. 미국의 형사실천에서는 《판결전조사보고》가 그것을 준비하는 재판소의 소유로 되여있으며 일단 조사보고서가 재판소에 제출되면 그 부본을 피고와 피고측 변호사, 기소측 변호사에게 보내도록 되여있다. 때문에 범죄자들은 재판소가 관심하는 문제들을 손쉽게 알게 되며 필요한 《대책》 즉 판결에 리용될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없애버릴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미국에서 집행유예판결을 위한 《판결전조사》가 범죄자들에게 책임회피와 형벌선택의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합법적공간으로 되고있으므로 범죄자들은 이를 위해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것은 또한 집행유예의 취소와 관련한 조건들을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규정해놓음으로써 그들이 집행유예기간 자유로이 범죄를 범할수 있도록 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국의 집행유예제도에서도 집행유예의 취소에 대하여 규제하고있지만 취소의 근거로 되는 《위반》의 범위가 매우 협소할뿐아니라 취소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집행유예기관들에 적지 않은 권한을 주고있다.

미국의 집행유예제도에서 취소의 근거로 되는 《위반》은 새로운 범죄의 감행과 일명 《기술적위반》이라고도 부르는 집행유예조건들에 대한 위반이다. 여기서 집행유예의 조건들은 대체로 일반적이거나 매우 모호한 내용들로 규정되여있기때문에 집행유예기관들은 《기술적위반》에 대한 처리에서 상당한 정도로 자유재량할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는것이 보통이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의 취소가 집행유예조건들을 위반하거나 지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여도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대체로 보다 엄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간단한 형무소기간을 거치도록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집행유예제도가 이처럼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담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은 유예기간 그 어떤 죄의식도 없이 하고싶은 행위 들을 마음대로 저지르고있다.

특히 미국의 집행유예제도에서는 그 취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여러 단계들과 복잡한 절차들을 규정하고 그 과정에 집행유예자에게 적지 않은 권리를 부여해주고있기때문에 범죄자들은 이 공간을 리용하여 저들의 범죄적행위를 정당화하고있다.

미국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자면 두개의 단계 즉 비공식적이며 예비적인 조사단계와 형식적재판심리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두 단계에서 집행유예자는 재판심리와 자기의 책 임을 통지받을 권리, 재판에 참가하고 증인과 증거를 제시할 권리, 공평하고 중립적인 심 리당사자를 요구할 권리, 변호받을 권리 등 여러가지 권리들을 부여받게 된다. 집행유예 의 취소와 관련한 이러한 합법적공간들을 통하여 범죄자들은 저들의 범죄적행위를 정당 화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미국형법에 규제된 집행유예제도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범죄로 얼룩진 미국사회의 진면모를 가리우고 미국의 반동적인 법률제도를 미화분식하는 수단으로 되고있다는데 있다.

오늘 미국의 어용형법리론가들은 반동적인 저들의 집행유예제도를 놓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구현된 법률제도》이며 형벌적가치를 가지지 않는 집행유예를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저들의 집행유예를 가리켜 《인권》이 철저히 보장된 《가장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형사법실천에서 집행유예의 적용실태는 그들의 주장이 미국사회의 범 죄실태를 감추고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급만을 위한 미국의 법률제도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날이 감에 따라 늘어나는 범죄문제와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문제들을 메꾸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법률적수단의 하나로서 집행유예제도를 리용하고있다.

미국은 범죄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난 20세기 중엽부터 《사회적처벌》이라고 부르는 여러가지 처벌수단들을 형법에 새로 규제하는데로 나가게 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세기 80년대에 이미 일부 소송단계들에서 적용하고있던 처벌수단들을 묶어 《중간처벌》이라는 비감금형벌을 형벌종류의 하나로 형법에 규제하는것과 함께 집행유예나 가석방과 같은 《사회적처벌》들을 적용하여왔다.

오늘날 미국이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법적제도들로써 범죄적인 미국사회의 진면모를 가리우고 범죄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그것은 결코 문제해결의 방도로 는 되지 못한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 집행유예를 거친자들속에서 재범 률이 매우 높다.

미국이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법적제도로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법률제도를 분칠하려고 책동하여도 그것이 결코 미국의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 될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운운하는 미국의 집행유예제도가 안고있는 반동적본 질을 정확히 파악하는것과 함께 집권층과 특권층의 온갖 범죄를 무마시키고 정당화해주 기 위한 집행유예제도를 규제하고있는 미국형법의 반동성을 철저히 폭로비판함으로써 우 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법률적으로 옹호고수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